

정철의 단가 “새원 원쥬 되어” 연작의 배경

김태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시가미학 전공
suri4w@daum.net

I. 머리말

II. 고양 촌거의 사유

III. 원주 고사

IV. 맺음말

I. 머리말

가사의 제1구가 “새원 원췌 되여”로 시작하는 정철(鄭澈)의 단가 총 3수는 『송강가사』(松江歌辭)의 여러 판본에 모두 동일한 순서로 등재되어 있으며, 판본에 따른 본문의 차이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¹⁾ 따라서 『송강가사』를 간행한 이들은 모두 “새원 원췌 되여”로 시작하는 정철의 단가 총 3수를 본디 연작(聯作)의 하나로 보았던 듯싶다. 본고는 이것을 한데 아울러 〈새원가〉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새원 원췌 되여,
널손님 디내옵닌.
가거니, 오거니, 人事도 하도 할샤.
안자셔
보노라 흥니, 슈고로와 흥노라.²⁾

〈새원가〉는 새원이라는 지명과 원주라는 소임이 언급되어 있는 까닭에 여타의 단가에 비하여 그 제작 배경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평설을 두루 참조해 보건대 단순히 그 제작 배경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뜻밖의 오해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새원가〉 제1장에 주어진 다음과 같은 평설은 작품에 대한 애호가 오히려 사실관계를 벗어난 데서 비롯된 듯하여 아쉽다.

詩的 洗鍊味가 없다. 무심코 혼자 지꺼리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런 속에서 「슈고로와 흥노라」의 한마디에서 行人의 인사를 未安히 여기는 人情이 저절로 올라나고, 그 마음의 꾸밈새 없음이 흐뭇하기만 하다. 맨머리에 삼베옷을 걸친 院主가 허리를 꾸벅거리며 절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안자셔 보노라」에서 텅텅하게 떠오른다. 이것이 이 작품의 「은근」이다. 樸은 어찌 太古의 無時間性 속에서만 꾸며지리오. 주고받는 말 한마디, 그 속에 實存하기도 한다.³⁾

1) 우리가 오늘날 성주본(星州本)이라고 부르는 판본은 다만 한자와 독음을 아울러 새긴 것이 여타의 판본과 다르다. 이 밖에 『송강단가』의 여러 판본에 관한 정보는 김문기(1989)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金文基, 「松江·蘆溪·孤山의 歌集 板本 및 冊板 研究」, 『국어교육연구』 제21집(국어교육학회, 1989), 1-49쪽.

2) 鄭澈, 『松江歌辭(星州本)』 下-8b-9a.

3) 崔珍源, 「江湖歌道」, 『國文學과 自然』(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77), 110쪽.

삼문을 지나는 길에 멀찍이 동헌에 앉아 있는 원님을 알아차리고 저마다 머리를 꾸벅이는 백성들이 어찌나 고마운지, 그들을 조금이라도 소홀찮게 대하려고 거듭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를 굽히는 원님의 태도가 엿보이면서, 기껏해야 “人事”의 많은 것을 가지고 수고롭기까지 했던 인정의 순박한 것과 풍도의 소탈한 것이 여실하게 드러난다.⁴⁾

최진원과 김태환의 평설은 모두 〈새원가〉 제1장의 “人事”를 간단히 ‘절[答禮]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당한 견해가 아니다. 김태환의 경우는 또한 “원궐”을 “원님”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욱더 부당한 한낱 오해다. 이러한 오해는 작품의 제작 배경을 면밀히 살피지 않아서 생겼다. 우선은 작품의 제작 배경에 관한 연구가 시급해 보이니, 본고는 〈새원가〉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정황을 논구해보기로 하겠다.

II. 고양 촌거의 사유

〈새원가〉에 나오는 “새원”은 조선 말기의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元堂面)에 속하는 ‘新院’을 가리키는 말이다. 1863년에 완성된 『대동지지』(大東地志)는 이곳을 다만 “元堂”으로 적었고, 1911년에 집성된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는 이곳을 원당면 신원리(新院里)에 속하는 “水谷[물구리]·“陵谷[능골]” 및 “安谷[안골]” 등으로 적었다.⁵⁾ 오늘날 경기도 고양시 원신동에 속하는 ‘송강마을’과 그 일대다.

정철이 그의 일생을 통하여 고양에 머물러 지내게 되었던 계기는 모두 여섯 차례에 이른다. 첫째와 둘째는 35세 4월에 겪었던 아버지 판관공(判官公) 정유침(鄭惟沈)의 별세와 38세 4월에 겪었던 어머니 공인(恭人) 죽산안씨(竹山安氏)의 별세다. 셋째는 42세 11월에 겪었던 둘째 누님 계림군부인(桂林君夫人)의 별세다. 넷째는 이수(李銖)의 옥사(獄事)에 기인한 43세 12월의 사직이다. 다섯째는 심의겸(沈義謙)의 패퇴(敗退)에 결부된 50세 8월의 파직이다. 여섯째는 54세 8월에 겪었던 첫째

4) 金泰煥, 「朝鮮時代 詩歌文學의 素朴美 研究」,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2000), 195쪽.

5) 金正浩, 『大東地志』 3-13b. 「高陽」 坊面;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354. 「高陽郡」 元堂面 村里名.

아들 기명(起溟)의 별세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정철의 거처를 고양으로 명시한 그의 문집과 연보 및 행장 등의 기록을 간추린 결과일 뿐이다. 여기에 고찰의 심도를 더하면 훨씬 더 많은 계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편한 논의를 위하여 자료에 명시된 경우를 중심으로 이상과 같은 여섯 차례의 것만 논의에 부치기로 하겠다. 각각의 계기에 따른 촌거의 기간은 다음과 같았다.

- ① 1570.04-1572.06: 부친 시묘 2년 2월, 이후 조정 복귀
- ② 1573.04-1575.06: 모친 시묘 2년 2월, 이후 조정 복귀
- ③ 1577.11-1577.04: 동기 장례 6월, 이후 조정 복귀
- ④ 1578.12-1580.01: 사직 퇴거 1년 2월, 이후 강원 출사
- ⑤ 1585.09-1585.11: 파직 퇴거 3월, 이후 호남 낙향
- ⑥ 1589.08-1589.10: 자식 장례 3월, 이후 조정 복귀

여기서 시묘와 장례를 위한 기간에 있었던 정철의 일상은 결코 <새원가>를 지어 부를 만한 처지가 아니다.⁶⁾ 이러한 한사(閑事)는 단기간의 복중(服中)에 있어도 불가한 일이니, 하물며 삼년상(三年喪)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새원가>를 지어 부를 만한 정황은 이수의 옥사에 기인한 사직과 심의겸의 패퇴에 결부된 파직을 가장 유력한 계기로 가진다. 그러면 먼저 전자의 맥락을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1. 1578년 9월의 동서 접전

이수의 옥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578년 7월 경연에 나아간 김성일(金誠一)이 조정 관인의 탐오한 풍조를 시폐로 지적하는 가운데 문득 진도군수 이수가 도성의 권귀(權貴)를 위하여 막대한 분량의 쌀을 뇌물로 바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서 발단했다.⁷⁾ 당시의 대간(臺諫)

6) 종래의 견해는 <새원가>의 제작 시점을 35-40세 시묘 기간에 두거나 50세 파직 기간에 두었다. 김삼불, 『송강가사 연구』(북한: 국립출판사, 1956), 237쪽; 徐首生, 「古時調의 解釋과 作品 是非」, 『語文學』 제14집(韓國語文學會, 1966), 11쪽.

7) 李裁, 『鶴峯先生文集附錄·年譜』 1-9b. 「戊寅」: “七月, 以弘文館校理赴召還朝。一時有一宰臣, 受人船運賂物。先生於筵中, 極陳貪風大肆, 苞苴顯行。仍啓曰, 不謂聖明之世, 有此事。上厲聲問之, 先生即一一歷舉。”

은 곧바로 이수를 압송하여 심문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윤두수(尹斗壽)·윤근수(尹根壽) 형제와 그들의 조카 윤현(尹峴)을 그 수여자로 지목했다. 동인과 서인이 여기서 격돌했다.

대사헌 박대립(朴大立)과 대사간 이산해(李山海)가 윤씨(尹氏) 3인의 죄악을 공격하고 적발하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대개는 장령 이발(李潑)이 항간에 떠도는 말을 주워 모아 손수 초계한 것이었다. 조정이 마침내 크게 요동치게 되었고, 동인과 서인이 접전한 것이라고 여겼다.⁸⁾

이수는 윤두수·윤근수 형제의 이종사촌 조카였다. 혈연이 매우 가까운 까닭에 반드시 물질이 왕래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러나 이수의 옥사는 당사자와 그 증인에 대한 문초를 시작한 1578년 9월 이래로 6개월이 넘도록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의 자복도 받아내지 못하고 마침내 1579년 4월 미결로 끝났다. 그러나 그 파장은 1578년 10월 서인에 속하는 윤씨 3인의 파직과 김계휘(金繼輝)의 좌천을 불렀고, 이듬해 4월 동인에 속하는 김우굉(金宇宏)·송응개(宋應漑)의 파직을 불렀다.

오래지 않아 윤씨 3인을 서용하라는 왕명이 나왔다. 대간은 ‘이수의 옥사가 아직 귀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준 사람이 국문을 받고 있는 터에 받은 사람이 복직하게 되면 사리를 크게 잃는다.’라고 다투어 아뢰되, 공은 홀로 이수의 옥사를 원통한 것으로 여겨서 논계를 수궁하지 않았다. 드디어 이 일로 탄핵을 받아 벼슬이 갈렸다.⁹⁾

정철은 저 옥사가 실상은 서인의 실세를 축출하기 위하여 조작한 동인의 함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입장에 있었다. 정철은 저간의 사태에 지독한 노여움을 품은 채로 1578년 11월 대사간 벼슬을 매우 달갑잖게 받았다.¹⁰⁾ 이윽고 윤씨 3인의 복직을 허락하는 왕명이 나오자,

8) 『宣祖修正實錄』 12-15a. 「11年(1578)10月1日戊寅」: “大司憲朴大立、大司諫李山海、攻訐三尹罪惡、無所不至、皆掌令李潑掇拾流言、手自草啓也。朝廷遂大撓、目爲東西接戰。”

9) 宋時烈, 『松江鄭文清公年譜』 上-17a. 「戊寅」: “未幾、上下敍命。臺諫以爲李銖之獄、時未究竟、與者方鞫、而受者復職、殊失事體、爭啓、而公獨以銖獄爲、不肯論啓。遂以是被劾而遞。”

10) 宋時烈, 『松江鄭文清公年譜』 上-16b. 「十一月、除司諫院大司諫、被劾遞。-公憤時輩誤事、將欲退歸、而適有是命、以書問去就於栗谷。”

대간은 옥사가 아직 귀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왕명에 맞섰다. 정철은 여기에 홀로 반기를 들었다.

정철은 전조(銓曹)가 이미 동인의 수중에 넘어간 시점에 대사간 벼슬을 받았다. 따라서 대간의 논의를 주도할 만한 동조 세력을 끌어올 수 없었다. 정철은 철저히 고립된 지경에 내몰려, 대사간 자리에 있고도 동료의 탄핵을 면하지 못하는 낭패를 겪는다. 정철은 이후로 일체의 관직을 거듭 물리쳐 받지 않았다. 기간은 1578년 12월 대사간 벼슬을 벗어난 때부터 1580년 2월 강원도관찰사로 나가는 때까지 1년여 세월에 이른다. 그러면 이 기간에 정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것인가?

기존의 견해는 둘로 나뉜다. 최태호·박종우와 박영주는 당시에 정철이 전라도 창평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¹¹⁾, 김진옥과 김덕진은 그가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¹²⁾ 그러나 이것은 모두 추정일 뿐이지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입증한 궁극의 견해가 아니다. 실제로 정철의 연보나 행장을 통하여 당시의 거처를 추정할 만한 단서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연보와 행장에 명시된 행적은 다만 그가 대사간 벼슬을 벗어난 때부터 강원도관찰사로 나가는 때까지 줄곧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는 데서 그친다.¹³⁾

그런데 당시의 거처를 확인할 만한 단서가 정철의 문집에 보인다. 전라도 창평에서 올라온 김성원(金成遠)과 더불어 상화환 절구 1수가 있으니, 제목을 ‘강숙(剛叔)이 차임되어 서울에 올라왔다가 고양 촌거를 찾아왔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강숙’은 곧 김성원의 자를 적은 것이다. 당시의 거처가 제목에 밝혀져 있는 만큼 그 시점이 문제로 되는데, 이것은 김성원이 차임되어 서울에 올라왔다는 시점과 하나다.

들녘에 문득 비가 내리고,
하늘에 해는 마침 한낮이러니.

11) 崔台鎬, 「松江漢詩年代考」, 『牧園大學論文集』 제10집(牧園大學校, 1986), 90쪽; 박종우, 「松江 鄭澈의 詩世界와 政治現實」, 『漢文學報』 제4집(우리한문학회, 2001), 35쪽; 박영주, 「松江의 交遊詩 연구」, 『古詩歌研究』 제18집(한국고시사학회, 2006), 167쪽.

12) 김진옥, 「정철 연구 (1)」, 『人文科學研究』 제21집(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102쪽; 김덕진, 「송강 정철의 학문과 정치활동」, 『역사와 경계』 제74집(부산경남사학회, 2010), 206쪽.

13) 宋時烈, 『松江鄭文清公年譜』 上-18b. 「庚辰」: “正月, 除江原道觀察使. - 公自李鍊獄事後, 休官不出, 至是始拜命.”; 金集, 『松江別集·附錄』 5-5b. 「行狀」: “公自遞諫長, 連拜大司成、兵曹參知、刑曹參議, 皆不仕. 庚辰正月, 出公爲江原道觀察使, 公迺拜命.”

일마다 술 마실 일인데,
길이란 산이라도 어디나 막힘이 없구려.

田間雨忽至，雲外日方中。
萬事人將醉，千山路不窮。¹⁴⁾

김성원은 1558년 사마시에 합격한 이후로 과업을 아예 버리고 처사로 지내다가 효행으로 지방관 추천을 받아 1580년 봄에 참봉 벼슬을 처음 받았다. 당시에 김성원은 북교(北郊) 제사에 차출되어 그해의 봄을 서울에서 보냈다.¹⁵⁾ 정철이 말하는 김성원의 차임은 반드시 이것을 가리키는 바일 수밖에 없으니, 김성원은 이듬해 곧 금산의 제원도(濟原道) 찰방이 되어 외지로 나갔다.¹⁶⁾ 이후는 시기와 장소가 그 계기로 더불어 서로 어긋나게 되어 김성원이 서울에 차출되어 올랐던 적이 없거나 정철이 고향에 없었다.

김성원이 이전에 정철과 마지막 헤어진 것은 정철이 그의 둘째 누님 계림군부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전라도 창평을 떠나던 1577년 11월 일이다. 정철은 바로 그 11월 마지막 날에 또한 인종(仁宗)의 후비 인성왕후(仁聖王后)의 상사를 만나 고관을 지낸 백민의 하나로 조정에 나갔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경연참찬관을 겸하는 동부승지 벼슬을 받았다. 정철은 아직도 멀쩡히 조정에 있어야 했었다. 그래서 김성원은 당시의 재회를 이렇게 읊는다.

그대가 황량한 교외에 있다고 하기에,
가랑비 속을 헤매어 찾아왔노라.
내일 아침 산 너머 멀리 헤어질 양이면,
뒤를 돌아보는 마음 어찌 다하리?

人在荒郊外，客歸烟雨巾。
明朝隔山岳，回首意何窮。¹⁷⁾

14) 鄭澈, 『松江別集』 1-1a. 「剛叔逢差上京訪高陽村居」.

15) 金成遠, 『棲霞堂遺稿』 下-4a. 「年譜·庚辰」: “以孝行薦除寢郎。一時宣廟下教詢訪諸道遺逸孝廉，本道以公應命有是除。”; 金成遠, 『棲霞堂遺稿』 上-11b. 「到彰義門，門閉，露坐久然後開，到竹前洞，寥中得一絕」 注: “時差北郊祭，祭罷而還。”

16) 金成遠, 『棲霞堂遺稿』 下-4a. 「年譜·辛巳」: “除濟源道察訪。”

17) 金成遠, 『棲霞堂遺稿』 上-10a. 「同柳彥玉訪松翁于高陽村舍」.

김성원이 고양으로 정철을 찾아갔던 시점은 1580년 1월 이내에 있어야 가장 마땅할 것이다. 정철이 강원도관찰사로 나가던 시점은 그의 연보와 행장은 모두 1580년 1월로 적고 있지만, 이것은 사소한 착오다. 정철의 연보와 행장 및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의 저본이 되었던 이이(李珣)의 『경연일기』(經筵日記)는 그것을 2월로 적었다.¹⁸⁾ 『선조수정실록』도 2월로 적었다. 정철은 바로 그 2월에 찾아올 소식을 아직 모르는 채로 여전히 술에 찌든 나날을 고양에서 보내고 있었다.

새원 원쥬 되여,
되롱 샷샷 메오 이고,
細雨 斜風의 一竿竹 빗기 드리,
紅蓼花
白蘋 洲渚의 오명 가명 호노라.¹⁹⁾

정철은 적어도 1579년 그의 44세 1년과 이듬해 1월을 꼬박 고양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새원가> 제2장에 보이는 저 “紅蓼花 白蘋 洲渚”의 왕래는 당연히 이 기간에 들어 있었던 일상의 한 조각일 것이다. 여뀌는 물가에 자라는 한해살이 풀이다. 줄기의 끝에 붉거나 흰 꽃을 양력 6월부터 9월까지 피운다. 마름은 물낫에 떠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이다. 부레의 끝에 마름모꼴 잎을 가지며, 부레의 겨드랑이 쪽에 흰 꽃을 양력 7월부터 8월까지 피운다. 정철은 고양의 이러한 꽃들을 1585년 그의 50세 가을에 한 번 더 보게 되지만, 당시는 조상의 묘소에 긴박한 재해가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느라 바빴다.²⁰⁾ 따라서 “一竿竹 빗기 드리”를 노래할 만한 겨를이 없었다.

요컨대 정철은 <새원가> 제2장을 1579년 그의 44세 여름을 고양에서 보내는 동안에 지었다. 그리고 이것은 <새원가> 제1장이 또한 당연히 이 기간을 통하여 제작된 것임을 뜻한다. 왜냐하면 “널손님 디내옵디”의 본업을 이미 이루고 나서야 “새원 원쥬 되여”를 조건으로 하는 “되롱

18) 李珣, 『栗谷先生全書』 30-40a. 「經筵日記」 萬曆八年庚辰·二月: “以鄭澈爲江原道觀察使. 澈自遞大諫之後, 休官不出, 屢辭召命, 及拜是職, 以追榮先人爲重, 乃拜命赴任.”

19) 鄭澈, 『松江歌辭(星州本)』 下-9a.

20) 鄭澈, 『松江續集』 2-33a. 「與李魯翁-希參-書」: “鄙人爲先壘切迫災害, 來在高陽.”

※ 이것은 1585년 8월 25일의 조정 소식을 듣고 난 직후에 작성한 편지다. 원당리 증조의 묘소나 신원리 부모의 묘소가 여름을 나면서 심각한 재해를 입었던 듯하다.

삿갓 메오 이고”의 한사도 비로소 가능한 까닭에 그렇다. 그러나 <새원가> 제3장은 언어의 기색이 조금 다르다. 이것은 심의겸의 패퇴에 결부된 파직의 맥락을 마저 고찰해보아야 해명될 것이다.

2. 1585년 9월의 동인 득세

정철은 돈녕부 판사로 있었던 1585년 1월 경연과 4월 경연에 나아간 김우옹(金宇顛)과 정여립(鄭汝立)의 집요한 폄척을 잇달아 받았고, 여기서 또 한 번 관직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서익(徐益)의 5월 상소에 그의 퇴거 소식이 적혔고, 연보도 4월 결퇴(乞退)를 적었다.²¹⁾ 그러나 정철이 여기서 곧 고양에 돌아가 지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로 얼마 동안은 서울에 더 머물러 지내는 가운데 임금의 결정과 처분을 기다렸을 것이다.

당시에 정철의 거처가 특히 고양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굳혀진 것은 누차에 걸친 동인의 탄핵에 마침내 심의겸이 파직되고 아울러 서인이 모조리 그의 당파로 몰려서 퇴출되던 1585년 9월 2일의 일이다. 심의겸은 명종(明宗)의 후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아우다. 그에게 주어진 죄목은 ‘봉당을 만들어 국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가운데 조정의 정령(政令)과 궁공의 거조(舉措)를 지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과 ‘상중에 기복(起復)을 꾀했고, 아우의 아내를 독살시킨 뒤에 그것을 내지(內旨)라고 속였다.’는 것이 필두에 있었다.²²⁾ 심의겸의 패퇴는 곧 서인의 진출과 서인의 성세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 동인의 득세를 뜻한다.

『선조실록』(宣祖實錄)에 따르면, 당시의 대간을 장악한 동인이 맹렬한 기세로 심의겸을 논척하고 아울러 서인을 모조리 그의 당파로 몰아서 논열시킨 것은 1585년 8월 18일의 일이다. 그리고 그 논열에서 홍성민(洪聖民)과 구봉령(具鳳齡)이 뜻밖에 누락되어 있었던 것을 이발(李潑)이 다그쳐 추계한 것은 또한 1585년 8월 25일의 일이다.²³⁾ 다음은 저간에

21) 『宣祖修正實錄』 19-12b. 「18年(1585)5月1日辛未」: “義州牧使徐益上疏, 略曰, [...] 臣伏聞, 鄭汝立於筵中, 追攻李珥, 遂及朴淳、鄭澈, 使不安而退去, 他人猶可也, 汝立不可也.”; 宋時烈, 『松江鄭文清公年譜』 上-39a. 「乙酉」: “四月, 公上劄陳情乞退.”

22) 『宣祖實錄』 19-22b. 「18年(1585)9月2日己巳」: “立黨朋比, 擅弄國柄, 外而朝廷政令, 內而宮壺舉措, 無不指揮, 繫君父之手足, 箝一世之公論. 方居嚴父之喪, 規爲起復, 毒殺母弟之妻, 冒稱內旨.”

정철이 이희삼(李希參)의 처소로 보낸 편지다.

저는 선산(先山)의 절박한 재해를 처리하는 일로 고양(高陽)에 와 있습니다. 갖가지 험뜯는 말을 두루 얻어 듣게 되니, 시사(時事)를 개탄할 만하되, 명운(命運)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함공(涵公) - 이발(李潑) - 이 도성에 들어와 다시 홍시가(洪時可) - 성민(聖民)의 자(字) - 와 구경서(具景瑞) - 봉령(鳳齡)의 자 - 를 들어서 망타(網打)할 계책을 삼았다고 하니 웃습니다. [...] 저는 이미 기전(畿甸)에 생계를 걱정해 두기는 했으나 끼니를 잇지 못하고, 나쁘게 말하고 더럽게 꾸짖는 소리가 날마다 귀에 들리니, 오래지 않아 다시 아주 먼 곳으로 가려 합니다.²⁴⁾

정철은 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 대간의 논척과 이발의 추계가 잇달아 탐전에 제기된 줄은 이미 알고 있어도 심의검의 패퇴가 결정된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또한 거기에 연좌되어 함께 퇴출된 줄을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것을 필연의 것으로 예상한 정철은 향후의 거처를 이미 결정해두고 있었다. 연보는 그곳을 전라도 창평으로 적었다.²⁵⁾ 그러나 끼니도 잇기 어려운 형편에 옮겨갈 비용을 당장에 마련하지는 못했을 듯싶다. 거처를 실제로 옮기는 동작은 아무리 빨라도 추수가 다 끝난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을 것이다.

만리나 떠나는 진성(秦城)의 나그네,
삼년을 초군(楚郡)에 머물다.
미인은 하늘만큼 멀리 계시고,
세월은 물처럼 흘러서 간다.
기린각(麒麟閣)의 영예(榮譽)는 꿈조차 그치니,

23) 『宣祖實錄』 18-6a. 「17年(1584)8月18日辛酉」: “兩司論青陽君沈義謙, 前日植黨朋比, 貽禍士林, 外而朝廷政令, 內而宮壺舉措, 無不指揮.”; 『宣祖實錄』 18-6b. 「17年(1584)8月25日戊辰」: “大司諫李潑入京, 肅拜後, 啓曰, [...] 禮曹判書洪聖民, 副提學具鳳齡, 皆是義謙之親友, 與被斥者何異, 而獨不歷數, 非事君無隱之道.” ※ 『선조실록』은 1585년 8월 기사로 편차해야 마땅한 4건의 기사를 1584년 8월 기사로 편차했다. 예컨대 1584년 8월 25일 기사 제2항(『宣祖實錄』 18-7a.)과 1585년 8월 28일 기사 제1항(『宣祖實錄』 19-22a.)은 중복된 기사다. 후자가 바르게 편차되어 있으니, 이것은 곧 1585년 9월 2일 기사에 선행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24) 鄭澈, 『松江續集』 2-33a-33b. 「與李魯翁-希參-書」: “鄙人爲先壘切迫災害, 來在高陽. 贏得百般齒舌, 可歎時事, 天也奈何. 涵公-謂潑-入來之日, 更舉洪時可-聖民字-, 具景瑞-鳳齡字-, 以爲網打之計, 可笑. [...] 僕已定生理於圻甸, 而朝夕不繼, 惡言詈辭, 日及於耳, 不久更向稍遠處矣.”

25) 宋時烈, 『松江鄭文清公年譜』 上-46a. 「乙酉」: “八月, 被兩司論斥, 書名天府. 遂退寓高陽, 仍歸昌平.”

가을날의 시름을 슬피 읊노라.
장검을 가지고 몸을 막아도,
세사는 괴로이 머리에 박혀라.

萬里秦城客，三年楚郡留。
美人天共遠，徂歲水同流。
夢斷麒麟閣，吟悲蟋蟀秋。
防身一長劍，世事入搔頭。²⁶⁾

정철이 파직되어 고양에 머물러 있다가 이윽고 전라도 창평에 내려간 시점은 뚜렷이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1585년 12월을 결코 넘기지 않았다. 여기에 제시한 정철의 읊시는 송익필(宋翼弼)의 「숙귀학정」(宿歸鶴亭)을 차운한 것인데, 정철의 제첨(題簽)에 그 날짜를 1587년 11월 동짓날로 적었다.²⁷⁾ 날짜를 이렇게 적고도 작품의 본문에 ‘삼년을 초군(楚郡)에 머물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삼년’은 곧 1585년을 기점으로 삼아야 성립하는 했수다.

새원 원췌 되어,
柴扉를 고터 닳고,
流水 青山을 벗 사마 더 노라.
아히야,
碧蹄에 손이라커든, 날 나가다 호고려.²⁸⁾

정철이 파직되어 고양에 머물러 있었던 3개월여의 기간은 이수의 옥사로 사직하여 물러나 지내던 자취를 반복하는 바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새원가〉 제3장에 나오는 “柴扉를 고터 닳고”의 “고터”를 중시할 만하다. 이것은 본디 개정·개수 및 정돈 등을 뜻하는 말이나, 일찍이 김만중(金萬重)은 이것을 재차·재현 및 중복 등의 뜻으로 새겼고, 종래의

26) 鄭澈, 『松江續集』 1-28b. 「次壽翁韻」 第1首.

27) 鄭澈, 『松江續集』 1-28b. 「次壽翁韻」 題簽: “丁亥至月閉關日, 蟄菴居士拜.” 편집자 이선(李選)은 이 작품의 제목에 보이는 ‘壽翁’이라는 호를 1577년에 이미 별세한 유순선(柳順善)의 호로 주석해두었다. 그러나 ‘壽翁’은 송익필(宋翼弼)의 또 다른 호다. 원운이 또한 송익필의 문집에 전한다. ※ 宋翼弼, 『龜峯先生集』 2-4a. 「宿歸鶴亭」 第2首: “吾友客南國, 高亭墨尚留. 孤舟無繫處, 風海憶安流. 別裏看明月, 愁邊又一秋. 浮雲連漢樹, 遙夜幾回頭.”; 金成遠, 『棲霞堂遺稿』 上-30a. 「次壽翁-宋翼弼-韻」 注: “一號龜峯.”

28) 鄭澈, 『松江歌辭(星州本)』 下-9a-9b.

주석도 대개는 '다시의 뜻으로 풀었다.'²⁹⁾ 그러면 정철은 어째서 “柴扉”를 새삼스레 고쳐 닫으며 또한 “碧蹄에 손”은 결코 만나려 하지 않았던 것인가?

정철의 취지는 정객(政客)의 방문을 꺼리는 데 있었다. 사직한 사람이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지내면 대개는 그 본의를 의심받는다. 하물며 파직된 사람은 경우가 더욱 다르다. 서울에 머물러 지내는 것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다만 근교에 있어도 구설에 휘말려 들어갈 염려가 따른다. 정철은 심의겸의 당파로 배척된 시기와 이수의 옥사로 사직한 시기의 거처를 모두 근교의 고양에 두고 있었다. 서울과 매우 가까운 거리다. 이것은 정객의 방문을 사절할 만한 사유다.

그런데 정철이 것처럼 정객의 방문을 사절할 만한 사정은 심의겸의 당파로 몰려서 배척될 당시와 비교할 만큼 질실한 경우가 이전에 없었다. 임금의 말이 '너희의 죄악은 중률(重律)에 부쳐야 마땅할 것이나, 오늘은 다만 파직에 그친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때였다.³⁰⁾ 극형이 지척에 있었다. 따라서 <새월가> 제3장에 보이는 저 “날 나가다 흐고려”의 태도는 특히 1585년 9월 전후에 놓일 때라야 박진한 정상(情狀)이 눈에 뜨인다.

갈 때는 눈보라, 올 때는 또 비,
쓸쓸한 옛 역마에 초가집이 허름도 하다.
이 길로 해마다 손을 삼더니,
이제야 동녘에 산 두고 물 두어 수월히 지낸다.

去時風雪來時雨，古驛荒村草屋寒。
此路年年長作客，始安東畔有溪山。³¹⁾

이것은 정철이 이희삼의 처소로 부친 절구 연작 총 10수 가운데 하나다. 앞에서 언급한 편지에 덧붙여 보냈던 것인데³²⁾, 우선은 전구의 ‘해마다

29) 金萬重, 『松江別集追錄』 1-10b. 「關東別曲·鬮辭·二」: “汲君風流期再靚.”(汲長孺 風彩를 고터 아니 볼 거이고); 김삼불, 앞의 책, 93쪽; 鄭炳昱, 『時調文學事典』(新丘文化社, 1974), 106·236·420쪽.

30) 『宣祖實錄』 19-22b. 「18年(1585)9月2日己巳」: “論其罪惡，則合置重律，而今日之只罷其職，亦從末減，以示曲全之意.”

31) 鄭澈, 『松江續集』 1-24a. 「高陽山齋有吟寄景魯」 第5首. ※ 注: “李希參號魯翁，又字好古.”

32) 宋時烈, 『松江鄭文清公年譜』 上-48b-49a. 「乙酉」: “公與李希參書曰，鄙人爲先壘切迫

손을 삼더니'를 주목할 만하다. 정철은 관찰사가 되어 45세 2월 강원도, 46세 12월 전라도, 47세 12월 함경도 등을 떠들다가 48세 3월 예조판서로 조정에 복귀하게 되지만, 복귀하고 나서도 48세 9월 사직과 49세 5월 사직을 거듭 겪었다.³³⁾ 그러니 전구의 '해마다 손을 삼더니'는 허사가 아니다. 이것은 누차의 사직에 따른 거처가 대개는 고양에 누적된 사실을 비추는 말이다.

그리고 결구의 '이제야 동녘에 산 두고 물 두어 수월히 지낸다.'의 정경이 〈새원가〉 제3장에 보이는 “流水 靑山을 벗 사마 더 노라”의 정경을 빼닮아 있음도 주목할 점이다. 산이며 물은 이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을 테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를 거기에 완전히 던진다. 이러한 포기는 이전에도 몇 번이고 있었을 것이나, 이제는 세상도 나를 아주 버렸다. 이로써 보건대 적어도 〈새원가〉 제3장은 그 제작 시기를 정철의 50세 9월 전후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Ⅲ. 원주 고사

〈새원가〉에 나오는 “원주”는 곧 ‘院主’를 적은 것일 뿐이지 한 고을의 원님(員-)을 가리키는 뜻으로 ‘員主’를 적은 것이 아니다. 정철은 고을의 원님이 되어 지방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욱이 우리의 옛 관습에 고을의 원님을 가리켜 말하는 지칭은 따로 있으니, 대개는 그냥 ‘邑倅’라고 하거나 또는 ‘高興倅’·‘舒川倅’ 등과 같이 고을의 명칭을 앞에 붙여서 ‘췌[倅]’라고 하였다. 이러한 ‘췌[倅]’는 본디 주군(州郡)의 장관(長官)에 대하여 그 부직(副職)을 뜻하는 말이다.

정철은 27세 8월에 보령현감(保寧縣監) 벼슬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현지에 실제로 부임을 하지는 않았다.³⁴⁾ 정철의 지방관 경력은 다만

災害, 來在高陽. [...] 惡言訾辭, 日及於耳, 不久更向稍遠處矣. 所寓深僻無客, 故作一詩曰, 晝伴寒蟬夜伴蛩, 莫言深谷少人蹤. 自從中歲交遊廢, 既學無情又學慵.” ※ 여기에 인용된 절구는 「高陽山齋有吟寄景魯」第1首(鄭澈, 『松江續集』 1-23b.)에 해당하는 것이다.

33) 宋時烈, 『松江鄭文清公年譜』 上-29a-31b. 「癸未」: “九月, 被諫院論劾, 上疏陳情乞免. 四度呈辭, 加給由, 又再疏乞免, 不許, 遂出仕.”; 宋時烈, 『松江鄭文清公年譜』 上-38b. 「甲申十二年」: “五月, [...] 諫院處置不公, 公又辭不出. 後以上言回啓遲滯, 遞.”

세 차례의 관찰사 벼슬이 전부다. 그러니 저 “원주”는 결코 고을의 원님을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고을의 원님도 관계가 없지만, 정철의 신분과 원주는 더욱더 거리가 멀었다. 그러면 어찌서 그는 문득 원주를 자처하여 “새원 원주 되어”라고 말했던 것인가?

새원원주 = 「새원」은 경기도 고양군(高陽郡)의 신원(新院). 「원주」는 원의 주인. 신원은 역참이다. 작자가 그의三五세 때부터 四〇세까지 부모상을 당하여 신원에서 러묘(廬墓)살이를 할 때의 작이거나, 그의 五〇세 되든 해, 즉 선조八年 량사(兩司)의 른척을 받아 신원에 물러났을 때의 작품인 듯하다. 신원에서 벼슬살이를 한 것은 아니다.³⁵⁾

원주는 곧 원(院)의 주인을 말한다. 원은 또한 역(驛)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곁에 설치한 일종의 객점(客店)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을 단순히 역참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폐가 따른다. 원과 역은 서로 다르니, 원의 기본적 성격을 당대의 실상에 비추어 고찰해보아야 하겠다. 원주를 지낼 만한 지체가 아닌데, 정철이 문득 원주를 자처하게 된 사연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원의 기능과 원주

역은 자고로 통신을 위하여 설치한 일종의 행정 관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무를 띠고 여행하는 관원에게 휴식과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던 장소다. 역은 대개가 역사(驛舍)와 더불어 누정(樓亭)·객방(客房) 등의 시설을 아울러 가졌다. 이것은 역과 원이 서로 비슷한 기능을 지니게 되었던 이유다. 원은 나그네를 위하여 설치한 숙소다. 그러나 관서의 성격을 지니는 장소는 아니다. 예컨대 권근(權近)의 기문에 전하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참조할 만하다.

나라에서 역(驛)을 설치하여 사명(使命)을 전달하고, 원(院)을 설치하여 상려(商旅)에게 혜택을 베푸니, 공사(公私)와 상하(上下)의 분별이 뚜렷하다. 그러나 역에는

34) 宋時烈, 『松江鄭文清公年譜』 上-4b. 「壬戌」: “八月, 除保寧縣監. 未赴. 除典籍. 九月, 除禮曹佐郎.”

35) 김삼불, 앞의 책, 237쪽.

저마다 관리가 있어 그 직책을 받들되, 원은 다만 밭을 주고 사람을 모아 주인을 삼는다. 따라서 비록 평원(平原)의 옥토(沃土)에 있어도 원은 그저 옛터만 남아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 곳곳이 다 이렇다. 허물며 깊은 산중의 높고 척박한 곳이라?³⁶⁾

역은 원칙적으로 공무를 띠고 여행하는 관원이라야 묵어갈 수 있었다. 원은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 누구든 자유롭게 묵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다. 도로의 여건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역과 원은 본디 용무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여 담당하고 이용자 신분의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구별하여 허용하는 점이 서로 달랐다. 이것은 원이 경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역은 도로와 역마를 관장하는 찰방의 휘하에 있었다. 역은 또한 저마다 역장(驛長)을 두어 운영의 책임을 맡겼고, 아울러 사령(使令)·통인(通引)과 보인(保人)·솔정(率丁)·관군(館軍) 및 노비(奴婢) 등을 두어 찰방과 역장의 활동을 도왔다. 여기서 보인·솔정·관군 등은 군무(軍務)를 담당하는 바였고, 노비는 역전(驛田)에 노동을 제공하는 바였다.³⁷⁾ 그러나 원은 오로지 원주를 두었을 뿐이다.

원주는 향리 이하의 양인(良人)이 거의 세습적 지위로 대를 이어 차지하던 하급 관리의 하나다. 원주는 그 직역의 대가로 약간의 전토를 받았고, 부역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렸다.³⁸⁾ 원주가 받았던 전토는 대로 1결 35부, 중로 90부, 소로 45부 규모다.³⁹⁾ 그런데 이것은 역장이 받았던 2결에 견주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주의 지위를 꿰이지 않고 이어나간 경우는 매우 적었다.

서늘한 곳과 따뜻한 곳을 고루 갖추고, 윗사람이 묵을 곳과 아랫사람이 묵을 곳을 달리 만들며, 밥 지을 부엌간과 마소를 들여놓을 마구간도 제대로 다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그 무리에서 부지런하고 공손하며 착하고 어진 일을 좋아하는 이로 하여금 여기에 살면서 살림을 주관하게 하여, 여름은 푸성귀를 심어 가꾸고, 겨울은

36) 權近, 『陽村先生文集』 12-19a. 「犬灘院樓記」: “國家置驛以傳使命, 置院以惠商旅, 公私之辨, 上下之分明矣. 然驛各有吏, 以供厥職, 若院則只給田以募人爲主耳. 故雖在平原沃壤之中, 院有舊址, 而無人爲主者, 往往皆是. 況於深山嶮薄之地乎.”

37) 秦星圭, 「朝鮮時代 驛에 對한 一考察」, 『論文集』 제9집(新羅大學校, 1980), 245쪽.

38) 權近, 『陽村先生文集』 13-6a. 「德方院記」: “我國之典, 特優院吏, 賜田免役, 俾修館舍.”

39) 『經國大典』 2-11b. 「戶典·諸田」: “院: 院主大路一結三十五負, 中路九十負, 小路四十五負.” ※ 『經國大典』 2-11a. 「戶典·諸田」: “驛: [···] 長二結, 副長一結五十負.”

땀나무와 꿀풀을 쌓아두어, 이것을 사람에게 베풀고 가축에게 먹여주는 일을 길이 끊이지 않게 하였다.⁴⁰⁾

이것은 권근의 또 다른 기문에 전하는 바로서 원주의 소관을 드러낸 것이다. 원에 마련된 객방이 저와 같이 이용자의 신분에 따라 2개로 나뉘어 있었을 양이면, 마루와 부엌간이 또한 2개로 나뉘어 있었을 것이다. 마구간도 충분한 넓이로 2개를 갖추고 있어야 말썽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원주의 기본적인 직무다. 이 밖에 텃밭을 일구어 나그네의 한 끼니 반찬 장만에 이바지할 채소를 가꾸고, 땀나무와 꿀풀을 베어다 쌓아두는 작업도 별이다.

원주의 직무는 그것이 비록 하찮을망정 매우 번거로운 수고가 따른다. 왕래가 뜸한 곳이면 몰라도 거의 날마다 나그네가 들이닥치는 대로의 경우는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두었을 듯싶다. 이러한 노력은 더구나 모두 무료다. 그러니 부지런하고 공손한 성품만 가지고서는 그 노릇을 충실히 다하기 어렵다. 그것은 보시와 적선에 가까운 사회봉사를 스스로 기꺼워하는 이라야 감당할 수 있었다.

실제로 문경의 조령원(鳥嶺院)·동화원(桐華院) 등과 같은 위치나 천안의 삼기원(三岐院)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도 원이 활기를 띠고 운영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역에 딸린 숙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원의 행차가 빈번하여 위정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따랐던 경우가 아닌 바에는 역이 비록 중요한 대로에 있어도 숙소로 사용할 만한 시설은 이미 퇴락한 경우가 흔했다. 일례로 성현(成僉)의 기문에 전하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참조할 만하다.

안기역(安奇驛)은 포천현(抱川縣)에 소속된 역으로서 고을의 경계 인쪽에 있으며, 서울까지 100리쯤 떨어져 있으니, 서울에서 북쪽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 양주(楊州)를 지나 반드시 이 역에 묵는다. 그러나 사행(使行)을 가는 큰 행차는 모두 고을로 들어가 버리고, 여기에 머무는 이들은 모두 제 나름의 일로 길을 가는 나그네로서 잡스러운 손님일 뿐이니, 관리하는 사람도 오직 눈앞에 닥친 일만을 힘쓴다. 그래서 이 역이 거듭 무너져도 고치지 않았다.⁴¹⁾

40) 權近, 『陽村先生文集』 13-6b. 「德方院記」: “涼燠異所, 尊卑異處, 炊爨之廚, 馬牛之廄, 莫不咸備. 又令其徒勤謹而好善者, 居而主之, 夏蒔蔬菜, 冬積薪芻, 以施人畜, 永世無墜.”

41) 李荇·尹殷輔等, 『新增東國輿地勝覽』 11-38a. 「抱川縣」驛院 安奇驛 注引 成僉重修

역은 대체로 30리 간격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런데 공무를 띠고 여행하는 관원이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고을로 들어가 버리고 역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것은 관아에 마련된 객사가 훨씬 더 편리했던 까닭이다. 이러한 사세로 말미암아 역에 딸린 숙소는 그 본연의 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고, 그나마 대개는 사적인 용무로 여행하는 손들의 차지가 되었다. 그러나 위정자의 배려가 미치지 못하는 원은 더욱더 잔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원은 일정한 간격이 없이 다만 도로의 형편을 보아서 설치하는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개수가 매우 적었다. 역이 저와 같이 사적인 용무로 여행하는 손들의 차지가 되었던 것은 원이 그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생겨난 일이다. 원이 있어야 마땅한 위치는 노정이 자못 길어서 중간에 하루를 묵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나 산천의 요해처로서 깊은 물길에 이르고 높은 고개를 만나는 곳이다. 그러나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곳에도 실상은 원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계림(雞林)과 울주(蔚州)는 거의 100리나 떨어져 있으니, 오가는 사람이 반드시 하룻밤을 묵어야 갈 수 있는 거리다. 어염(魚鹽)을 교역하고 방수(防戍)를 교대하는 등의 일로 말을 타고 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지고 가는 사람, 싣고 가는 사람 등이 앞뒤로 이어지게 되지만, 예로부터 원(院)이 있지 않아서 묵어갈 곳이 없는 탓으로 반드시 민가를 빌어서 자야만 했었다. 더위와 장마로 폭죽 찢고 젖을 땀나 눈보라로 덜덜 떠는 날에 나그네는 머물러 가자고 간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은 집 안이 더럽혀지고 시끌벅적하게 되는 걱정이 있어서, 누구나 다 이것을 근심스럽게 여겼다.⁴²⁾

여기서 고양의 신원과 그 지리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고양의 신원은 파주(坡州)에서 혜음령(惠陰嶺)을 넘어서 오는 대로와 교하(交河)에서 신원천(新院川) 상류로 거슬러 오는 대로가 망객현(望客峴) 남쪽에서 합류하는 곳이자 서울로 향하는 대로가 이로부터 새롭게 뻗어 나가는

記：“安奇爲抱川縣屬驛，在縣之內，距京都百許里，自京北來者，過楊必宿於此。然使華大行皆入於縣，寓此者皆私旅雜賓，掌之者惟務目前之急，故此驛屢廢不修耳。”

42) 權近, 『陽村先生文集』 13-6a-6b. 「德方院記」: “雞林距蔚州僅百里，凡往還者必宿而達。魚鹽之貿易，防戍之更代，騎徒負載，前後絡繹，古未有院，無所於寓，必寄宿於民廬。暑雨之蒸濕，風雪之慘慄，行者有請寓之艱，居者有侵擾之憂，人皆患之。”

곳이다. 과주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85리에 이르고 교하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90리에 이르니, 황해도 방면에서 과주나 교하를 거쳐서 서울까지 가려면 도중에 고양의 어느 한 곳에서 반드시 하룻밤을 묵어야 했었다. 신원은 최적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고양의 신원은 여타의 지역에 위치한 신원과 다르게 1531년 당시로부터 그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아예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명칭이나 소재가 언급된 대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고양에 신원을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전토를 베풀어 원주를 배치한 적이 없음을 뜻한다. 정철이 고양에 퇴거할 무렵도 사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몸소 원주를 자처하게 된 것이다. 만약에 원주가 거기에 이미 있었을 양이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을망정 한때의 여기(餘技)로 무근한 비유를 꾸며서 남의 지위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양이 신원이 하나의 원으로 기능할 만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은 본디 원당리에 두었던 그 읍치(邑治)를 장령산(長嶺山) 동쪽으로 옮겨간 1528년 이후의 일이다. 고양은 1394년 종래의 고봉현(高峯縣)에 덕양현(德陽縣)을 아울러 붙이고 1413년 고을의 명칭을 고봉과 덕양의 결합 형태로 고치면서 읍치를 원당리로 옮겼다. 이전의 읍치는 원당리 서쪽 10리 부근에 있었다. 그러던 것을 1528년 회릉(禧陵)을 원당리로 옮김에 따라 읍치를 다시 장령산 동쪽으로 옮겼다.⁴³⁾ 오늘날 고양동에 해당하는 장소다. 당시에 벽제역(碧蹄驛)도 그 근처로 함께 옮겼다.

그런데 읍치가 아직 원당리에 있었을 때에는 벽제역의 옛 위치가 또한 읍치의 동쪽 15리 지점에 있었다. 이것은 장령산 동쪽으로 옮겨간 새 읍치의 남쪽 10리 지점에 해당하는 바로서 신원의 위치와 겹치는 장소다. 앞에서 논급한 정철의 절구에 ‘쓸쓸한 옛 역마에 초가집이 허름도 하다.’라고 했듯이, 정철이 개설했던 신원은 벽제역의 옛 위치를 답습하는 바였다. 벽제역의 새 위치는 새 읍치의 북쪽 2리 지점에 있으니⁴⁴⁾, 벽제역과 신원은 대체로 12리 간격을 가진다.

43) 金正浩, 『大東地志』 3-13a-13b. 「高陽」沿革: “本朝太祖三年, 置監務, 以幸州來併. 太宗十三年, 改高陽縣監. [...] 中宗元年, 復舊, 二十三年, 遷禧陵于元堂里, 移治于長嶺山之東.”

44) 金正浩, 『大東地志』 3-14b. 「高陽」驛站: “碧蹄驛-北二里.”; 金正浩, 『大東地志』 27-

고양의 신원은 특히 망객현을 넘어서 신원교(新院橋)를 건너는 나그네를 위하여 요긴하게 기능할 만했다. 직전에 벽제역 객관이 있기는 했지만, 관아에 가까이 인접한 이것은 공무를 띠고 여행하는 관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사신을 영접해야 하는 용도가 따로 있었다. 따라서 평상시라도 민간의 일반 여행자나 상인의 투숙을 허용하기 어려운 터였다. 그러나 여정의 편의에 따른 관례로 중국에서 오는 사신이 반드시 하루를 벽제역 객관에 묵어야 했듯이⁴⁵⁾, 벽제역 객관에 투숙할 수 없는 이라면 누구나 거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을 찾아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신원이 그 위치에 없을 수 없는 이유다.

정철은 원당리와 신원리에 증조의 묘소와 부모를 묘소를 두어 고양에 자주 오갔던 만큼 저와 같은 민간의 요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1578년 12월 이수의 옥사에 기인한 사직을 계기로 고양에 물러나 지내게 되는 신세에 놓이니, 차제에 신원을 개설하는 책무를 몸소 떠맡고자 했던 듯하다. 요컨대 신원은 이전에 없이 정철의 퇴거와 더불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새롭게 등장한 원이다.

2. 전대의 위민 전고

정철의 문집을 제외한 경우로서 고양의 신원이 하나의 지명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문헌 자료는 1592년 5월 16일 왜적의 결진 지점을 적은 이정구(李廷龜)의 「임진피병록」(壬辰避兵錄)과 1593년 1월 27일 아군의 접근 지점을 적은 『선조실록』의 기사인 듯싶다.⁴⁶⁾ 이후로 고양의 신원은 연경에 오가는 사신의 행로에 흔히 보이고, 왕실의 묘역에 오가는 임금의 주정소(晝停所) 위치로 흔히 쓰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의 조선 후기에 와서는 원이 아니라 다만 사실 주막(酒幕)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⁴⁷⁾

4a. 「程里考·西北至義州一大路」: “京都, 餅糜巨里十里, 踰大小綠巒峴, 梁鐵坪三里, 經館基, 礪石峴七里, 黔巖站三里, 渡德水川, 礪峴七里, 新院五里, 高陽十里, 碧蹄驛, 惠陰嶺五里.”

45) 李荇·尹殷輔等, 『新增東國輿地勝覽』 11-30a. 「高陽郡」驛院: “碧蹄驛-在郡東十五里. 中朝使臣, 入王京前一日, 必宿此驛.”

46) 李廷龜, 『月沙先生別集』 1-13b-14a. 「壬辰避兵錄」五月十五日條: “是夜行十里許, 天曙入大君陵山隱伏, 望見高陽大路, 賊群蔽道往來. [...] 夜行到新院, 院村賊方結陣, 含枚而過.”; 『宣祖實錄』 35-34b. 「26年(1593)2月19日甲辰」: “上曰, 我軍不往乎. 德馨曰, 李蘋在新院近處, 都元帥率軍百餘, 在天兵之後矣.”

조선 말기의 여러 지방 지도를 보아도 또한 신원점(新院店)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고양의 신원이 민간의 요구와 다르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전토를 베풀어 원주를 배치한 원으로 격상되지 못했던 것은 벽제역 객관까지 대체로 12리 간격을 가지는 위치에 신원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일을 시급하게 여기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는 동안에 원의 위치가 다만 사설 주막의 업소로 바뀌니, 이것은 또한 17세기 전반기 이후로 급속하게 전개된 화폐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조선 사회는 이른바 저화(楮貨)·동전(銅錢) 등의 명목 화폐를 보급하기 위하여 국초로부터 강력한 통화정책을 펴기는 했지만, 화폐의 교환 가치와 그 공신력을 보장해줄 만한 후속 조치의 미비와 생필품 공급의 안정을 꾀하기 어려운 경제 여건에 의하여 실패를 거듭했다.⁴⁷⁾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교역을 전대와 다름이 없이 미(米)·포(布) 등의 실물 화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침내 동전이 기준 화폐로 정립된 1678년 이전까지 지속되었다.⁴⁹⁾

경제적 교역을 실물 화폐에 의존하는 사회는 여행을 위한 부담이 장거리일수록 더욱 커진다. 거리에 비례하는 만큼의 실물 화폐를 출발과 동시에 운반해야 하는 노고와 그 비용이 별도로 필요한 까닭이다. 이것은 생계형 중소 상인의 상업 활동을 제약하는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자유로운 여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행은 숙식과 생필품 위주의 소액 거래를 장거리에 걸쳐서 전개해야 가능한 것이니, 부피와 중량을 크게 가지는 실물 화폐는 도무지 편리한 물건이 아니다.

원은 실물 화폐에 의존하던 단계의 무료 숙소다. 무료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원이 활기를 띠고 운영된 사례가 적었던 것은 사회가 아직 실물 화폐에 의존하는 관계로 여행을 위한 부담이 막중했던 데 이유가 있었다. 원을 대체할 만한 사설 주막이 조선 전기에 거의 등장하지

47) 『承政院日記』 677-148a, 「英祖五年(雍正七年)己酉八月二十九日巳時」: “今春順陵之幸, 亦由新院酒幕, 且爲停行之所, 申飭本官, 酒幕人雜役, 各別勿侵, 臨住館舍所入之人, 亦自本官, 米布參酌題給, 可也.”

48) 유현재, 「조선 초기 화폐 유통의 과정과 그 성격 - 저화 유통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제49집(朝鮮時代史學會, 2009), 83-91쪽; 朴平植, 「朝鮮初期의 貨幣政策과 布貨流通」, 『東方學志』 제158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114-121쪽.

49) 元裕漢, 「朝鮮後期の 金屬貨幣流通政策 - 17世紀前半の 銅錢流通試圖期를 中心으로」, 『東方學志』 제13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2), 104-105쪽.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 그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쇠퇴하여가는 원을 증설하고 개수하는 것은 위정자의 당연한 관심사에 속했다.

광주(廣州)에 원(院)을 하나 세워 신원(新院)이라고 부르니, 이것은 곧 판서 장순손(張順孫)이 지은 것이다. 어떤 나그네가 그 벽에 글을 적어놓기를 ‘원의 이름이 무엇이냐? 신원이다. 신원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냐? 새로운 것은 처음 비롯한 것을 말하니, 재상으로서 원을 세운 것이 이로부터 처음 비롯한 까닭이다. 분노를 거두어 제 발에 거름을 주려고 하더니, 더럽구나, 그 마음! 분노보다 더럽구나.’라고 하였다. 나그네가 다들 ‘장순원’(張順院)이라고 불렀다.⁵⁰⁾

이것은 종종 연간을 배경으로 하는 한 토막 일화다. 새롭게 원을 개설하여 나그네의 편익을 도운 덕행이 미담을 낳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탐오한 평소를 지탄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인데, 지탄을 받은 이의 진정은 그것이 아니다. 당시는 비록 탐오한 이라도 저와 같은 덕행을 빙자할 정도로 원이 드물게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는 또한 명목 화폐를 보급하는 정책마저 아주 폐지했던 관계로 나라에서 보장하는 공식 화폐가 전혀 없었던 때였다.⁵¹⁾ 그러니 어쩌다 가끔 분노나 받아서 거름을 삼으면 모를까, 당시에 원은 결코 영리의 방편이 될 수 없었다.

민간의 사설 주막이 원을 대체하려면, 바꾸어 말해서 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로 전환하려면, 동전과 같이 부피와 중량을 작게 가지는 소액 화폐가 지배적 교환 수단으로 통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계형 중소 상인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일반 백성의 여행도 자유롭게 되어 숙박업소가 비로소 활기를 띠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겨우 두어 말에 지나지 않는 양식을 가지고 일생에 마지못할 길을 떠난 사람들만이 원을 찾는다.

새원 원쥬 되어,
널손님 디내옵너.

50) 『中宗實錄』 41-38b. 「16年(1521)2月29日壬子: “廣州地作一院, 號爲新院, 乃判書張順孫所構也. 有一行人題其壁曰, ‘院名, 何. 新院也. 名新者, 何. 新者, 始也, 宰相作院, 自此始也. 欲取糞以糞其田, 陋哉, 其心. 陋於糞也.’ 行人皆稱張順院.”

51) 『中宗實錄』 15-9b. 「7年(1512)1月20日丙寅: “特進官張順孫-時爲戶曹判書. 一曰, 楮貨之法, 載在大典, 近來專廢而不用焉. 各司奴婢, 欲行用, 以便官員支供云, 更議參用何如. 從之.”

가거니, 오거니, 人事도 하도 할샤.
안자서
보노라 하니, 슈고로와 호노라.⁵²⁾

정철이 맞이한 나그네는 것처럼 겨우 두어 말에 지나지 않는 양식을 가지고 일생에 마지못할 길을 떠난 사람들이기 쉬웠다. 행상을 위한 왕래는 오히려 예사다. 장례로 오가고, 혼례로 오가고, 제례로 오가니, 일상의 관혼상제(冠婚喪祭)도 태반은 반드시 여행을 거쳐야 성사될 수 있었다. 과거나 군역은 남자의 마지못할 바였고, 가정의 사적 통신과 물품 수송을 위한 나들이는 또한 사천(私賤)의 주요 의무가 되었다. 때로는 여자가 친영을 나가고, 때로는 가족이 한꺼번에 이사할 일도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왕래를 새삼스레 가까이 가서 보건댄 “人事도 하도 할샤”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기존의 평설은 저 “人事”를 간단히 ‘절[答禮]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것은 온당한 견해가 아니다. 요컨대 <새원가> 제1장의 취지는 저렇듯 갖가지로 많은 인생사에 나아가 짚신을 축으로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행색과 그 노릇이 무척 수고로워 보인다는 것이다. 인정의 순박한 것과 풍도의 소탈한 것이 여기에 어찌 없을까마는, 발화의 취지는 나그네의 ‘절[答禮]을 받느라 수고롭기까지 했더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일생에 마지못할 길을 떠난 사람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안쓰러움일 뿐이다.

신유년에 물러나 광주(廣州) 고원(古垣) 강촌에 살면서 자은승(慈恩僧) 종림(宗林)과 방외(方外)의 벗이 되었고, 판교원(板橋院)·사평원(沙平院)을 고쳐 세워 스스로 원주(院主)라고 부르되, 해어진 옷을 입고 짚신을 신은 채로 노역하는 이들과 다름이 없이 그 일을 거드니, 지나는 사람들이 그가 고관(高官)을 지낸 사람인 줄을 알지 못했다.⁵³⁾

정철의 저 자취는 일찍이 조운홀(趙云僉)이 사평(沙平)과 판교(板橋)에 원을 고쳐 세우고 원주를 자처하던 자취를 그대로 빼어 닮았다. 조운홀이 광주(廣州)로 물러난 것은 고려 왕조가 나날이 쇠망의 길로 치닫던 1381년

52) 鄭澈, 『松江歌辭(星州本)』 下-8b-9a.

53) 『太宗實錄』 8-31a. 「4年(1404)12月5日壬申」: “辛酉, 退居廣州古垣江村, 與慈恩僧宗林爲方外交, 重創板橋、沙平兩院, 自稱院主, 敝衣草屨, 與役徒同其勞, 過者不知其爲達官也.”

그의 50세 되던 해의 일이니, 사평과 판교에 원을 고쳐 세운 것도 그 무렵의 일이다. 조운홀이 겪었던 일생의 곡절과 정철이 겪었던 일생의 파란은 사유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처신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

인늬니 가늬니 곶와
 한숨을 디디 마소.
 취흐니 썬니 곶와 선우음 웃디 마소.
 비 온 날
 니미 춘 누역이 벗귀 본들 엇더리?⁵⁴⁾

정철은 불우한 정계 현실을 거둬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그렇게 자주 떠나도 언제든 아주 가지는 못했다. 조정에 있거나 향촌에 있거나 자신의 본분을 바꾸어 가진 적이 없었다. 따라서 도롱이 차림을 하고서 문득 햇볕을 만나도, 향촌에 있다가 임금의 부름을 바빠 받아 나가는 이것을 전혀 겸연쩍게 여기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평소는 시절을 탓하여 마냥 한숨을 짓지도 않았고, 경우가 비록 술김일지언정 결코 시류를 좇아 선웃음을 웃어 보이지도 않았다.

정승 조준(趙浚)이 일찍이 조운홀과 교분(交分)이 있어 손님을 보내는 일로 한강을 건넜다가 동열 재상과 함께 기악(妓樂)을 거느리고 주찬(酒饌)을 마련하여 그를 찾았다. 조운홀은 중들이 입는 검은 옷에 샷갓을 쓴 채로 지팡이를 짚고 문까지 나와 길게 절하고 모정(茅亭)으로 맞아들였다. 자리에 들어 조준이 풍악을 울리고 주연을 베풀자, 조운홀은 귀가 먹어 듣지 못하는 척하며 눈을 감고 꽃꽂이 앉아 큰 소리로 나무야미타불을 거듭 외치되, 곁에 아무도 없는 듯이 하였다.⁵⁵⁾

조운홀은 1374년 그의 43세 봄에 상주(尙州) 노음산(露陰山) 아래로 물러나 몸을 숨기고 더는 세상에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⁵⁶⁾ 조정이 더욱 문란해져

54) 鄭澈, 『松江歌辭(星州本)』 下-11b.

55) 『太宗實錄』 8-31a. 「4年(1404)12月5日壬申」: “政丞趙浚與云伋有舊, 因送客過漢江, 與同列宰相, 率妓樂齋酒饌, 往訪之. 云伋緇衣箬笠, 扶杖出門長揖, 迎至茅亭. 坐定, 浚張樂置酒, 云伋佯聽不聞, 閉目危坐, 高聲唱南無阿彌陀佛者再, 傍若無人.”

56) 『太宗實錄』 8-30b-31a. 「4年(1404)12月5日壬申」: “洪武甲寅春, 以典法摠郎棄官, 退居尙州露陰山下, 佯狂自晦, 出入必騎牛, 著騎牛讚、石磻歌以見意. 丁巳, 起拜左司議大夫,

있었다. 왜구의 침입도 잦았다. 이후로 1381년 그의 50세 때에는 또한 광주로 물러나 이로써 여생을 다 마칠 듯이 파묻혀 지냈다. 그러다 7년 만에 다시 나왔다. 위화도 회군이 있었다. 오래지 않아 고려 왕조가 폐망에 이르자, 1393년 그의 62세 가을에 거듭 광주로 물러나 마침내 다시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조준(趙浚)이 정승의 행차를 가져간 것은 그가 영의정부사 벼슬을 받았던 1403년 7월 이후의 일이다.

정철의 이른바 “碧蹄에 손”은 아마도 저렇게 조준처럼 찾아올 손이었을 것이다. 조준이 올리는 풍악을 끝내 듣지 않았던 조운흥의 태도와 정철의 “날 나가다 흐고려”의 태도는 모두 시류와 더불어 가까이 부닐지 못하는 성미의 발로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또한 신세를 통틀어 강호(江湖)에 내던질 때에도 언제든 아주 가지는 못하던 바의 처신이 서로 닮았다. 그러니 두 사람의 원주는 우연히 서로 같았던 것이 아니다. 이들의 시선은 관복을 벗은 때에도 여전히 민생의 애처로운 것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인생은 본디 귀천이 따로 없으니, 지체가 아무리 존귀한 이라도 천지와 광음의 사이를 한낱 나그네로 머물다 떠난다. 하물며 이름도 없이 명멸하는 못사람의 생애야말로 가장 덧없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노릇을 위하여 바쁘게 오가고 고달피 머무는 발길은 그 의미를 알고서 하든지 모르고서 하든지 간에 모두 존엄한 것이다. 누구도 이것을 돕거나 말리지 못한다. 정철의 〈새원가〉 제1장은 이것을 애처롭게 여겨서 부른 노래다.

IV. 맺음말

정철의 〈새원가〉 연작 총3수는 어디서 언제 무엇을 노래한 것인가? 기존의 평설과 그 견해는 단순히 그 제작 배경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뜻밖의 오해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새원가〉 제1장의 “人事”를 간단히 ‘절[答禮]로 해석하거나 “원쥬”를 ‘원님’으로 해석하거나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오해다. 우선은 작품의 제작 배경에 대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이유에서 정철의 〈새원가〉 연작 총3수를

再轉判典校寺事，非其好也。”

적절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정황을 논구해 보았다.

정철의 〈새원가〉에 나오는 “새원”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元堂面)에 속하는 ‘新院’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작품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만한 주요 단서다. 정철의 문집과 연보 및 행장 등의 기록을 간추려 보건대, 정철이 그의 일생을 통하여 고양(高陽)에 머물러 지내게 되었던 계기는 모두 여섯 차례에 이른다. 여기서 〈새원가〉를 지어 부를 만한 정황은 특히 이수(李銖)의 옥사에 기인한 1578년 12월의 사직과 심의겸(沈義謙)의 패퇴에 결부된 1585년 9월의 파직을 가장 유력한 계기로 가진다.

정철은 이수의 옥사가 실상은 서인의 실세를 축출하기 위하여 조작한 동인의 함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정철은 여기에 불만을 품은 채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1579년 그의 44세 1년과 이듬해 1월을 꼬박 고양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새원가〉 제2장에 보이는 “紅蓼花 白蘋洲渚”의 왕래는 당연히 이 기간에 들어 있었던 일상의 하나다. 요컨대 정철은 〈새원가〉 제2장을 1579년 그의 44세 여름에 고양에서 지었고, 이것은 〈새원가〉 제1장이 또한 당연히 이 기간에 지어진 것임을 뜻한다. 왜냐면 “널손님 다내옵닌”의 본업을 이미 이루고 나서야 “새원 원췌 되어”를 조건으로 하는 “되롱 샷갓 떼오 이고”의 한사도 비로소 가능한 까닭에 그렇다. 그러나 〈새원가〉 제3장은 언어의 기색이 조금 다르다.

정철은 심의겸의 패퇴가 결정된 1585년 그의 50세 9월 다수의 서인과 함께 파직된 신세가 되어 대체로 3개월여 기간을 또 한 번 고양에 물러나 지냈다. 그런데 파직은 사직과 달라서 다만 근교에 있어도 구설에 휘말려 들어갈 염려가 따른다. 고양은 서울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이것은 정객(政客)의 방문을 사절할 만한 사유다. 여기서 이른바 “碧蹄에 손”을 사절한 〈새원가〉 제3장의 “날 나가다 흐고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니, 정철의 이러한 태도는 특히 심의겸의 당파로 몰려서 파직된 시점에 놓일 때라야 박진한 정상(情狀)이 눈에 뜨인다. 따라서 〈새원가〉 제3장은 그 제작 시기를 1585년 그의 50세 9월 전후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고양의 신원(新院)은 1531년 당시로부터 그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아예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명칭이나 소재가 언급된 대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고양에 신원을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전토를 베풀어 원주를 배치한 적이 없음을 뜻한다. 정철이 몸소 원주를 자처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신원은 이전에 없이 정철의 퇴거와 더불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새롭게 등장한 원이다.

원은 실물 화폐에 의존하던 단계의 무료 숙소다. 무료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원이 활기를 띠고 운영된 사례가 적었던 것은 사회가 아직 실물 화폐에 의존하는 관계로 여행을 위한 부담이 막중했던 데 이유가 있었다. 원을 대체할 만한 사설 주막이 조선 전기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 그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쇠퇴하여 가는 원을 증설하고 개수하는 것은 위정사의 당연한 관심사에 속했다.

정철이 원주가 되어 맞이한 나그네는 아무리 많아도 겨우 두어 말에 지나지 않는 양식을 가지고 일생에 마지못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기 쉬웠다. 이러한 왕래를 새삼스레 가까이 가서 보건댄 “人事도 하도 할샤”의 탄식이 저절로 나왔을 것이다. 기존의 평설은 저 “人事”를 간단히 ‘절(答禮)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것은 온당한 견해가 아니다. 정철의 취지는 갖가지 인생사에 나아가 쉼신을 축으로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행색과 그 노릇이 무척 수고로워 보인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노릇을 위하여 바쁘게 오가고 고달피 머무는 발길은 그 의미를 알고서 하든지 모르고서 하든지 간에 모두 존엄한 것이다. 누구도 이것을 돕거나 말리지 못한다. 정철의 〈새원가〉 제1장은 이것을 애처롭게 여겨서 부른 노래다.

정철의 〈새원가〉 연작 총3수는 모두 정계 현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에 따른 불평을 작품의 배후에 직결된 정서로 가진다. 배후의 정서가 그와 같은데, 노래는 “流水 靑山을 벗 사마 더뎛노라”의 호매한 태도가 오히려 뚜렷하다. 더욱이 “널손님 디내웁넌”와 같은 것은 인생의 귀천과 지체의 고하를 아예 모르는 이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서 말세에 다시 얻기 어려운 말이다. 시절에 노여워 마침내 아프고 괴로운 때에도 아무 얽매인 것이 없이 수수한 심사와 그 언어를 잃지 않는 이것이 곧 정철의 격조다.

참 고 문 헌

- 權近, 『陽村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제7책). 民族文化推進會 영인, 1988.
- 金成遠, 『棲霞堂遺稿』. 景仁文化社 영인, 1993.
- 金正浩, 『大東地志』. 亞細亞文化社 영인, 1976.
- 宋時烈, 『松江鄭文淸公年譜』: 『松江全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4.
- 宋翼弼, 『龜峯先生集』(韓國文集叢刊 제42책). 民族文化推進會 영인, 1988.
- 李珣, 『栗谷先生全書』(韓國文集叢刊 제45책). 民族文化推進會 영인, 1988.
- 李栽, 『鶴峯先生文集附錄·年譜』(韓國文集叢刊 제48책). 民族文化推進會 영인, 1988.
- 李廷龜, 『月沙先生別集』(韓國文集叢刊 제70책). 民族文化推進會 영인, 1988.
- 李荇·尹殷輔 等, 『新增東國輿地勝覽』. 景文社 영인, 1978.
- 鄭澈, 『松江續集』·『松江別集』·『松江別集追錄』·『松江歌辭(星州本)』: 『松江全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4.
-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景仁文化社 영인, 1989.
- 『經國大典』. 서울大學校 奎章閣 영인, 1997.
- 『宣祖修正實錄』(朝鮮王朝實錄 제25책). 國史編纂委員會 영인, 1968.
- 『宣祖實錄』(朝鮮王朝實錄 제21책). 國史編纂委員會 영인, 1968.
- 『承政院日記』. 서울大學校 奎章閣 소장 MF86-35-28-134-247(v.677).
- 『中宗實錄』(朝鮮王朝實錄 제14·16책). 國史編纂委員會 영인, 1968.
- 『太宗實錄』(朝鮮王朝實錄 제1책). 國史編纂委員會 영인, 1968.
- 김덕진, 「송강 정철의 학문과 정치활동」. 『역사와 경계』 제74집, 부산경남사학회, 2010, 189-220쪽.
- 金文基, 「松江·蘆溪·孤山の 歌集 板本 및 册板 研究」. 『국어교육연구』 제21집, 국어교육학회, 1989. 1-49쪽.
- 김삼불, 『송강가사 연구』. 북한: 국립출판사, 1956.
- 김진옥, 「정철 연구 (1)」. 『人文科學研究』 제21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91-115쪽.
- 金泰煥, 「朝鮮時代 詩歌文學의 素朴美 研究」.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 박영주, 「松江의 交遊詩 연구」. 『古詩歌研究』 제18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6, 153-205쪽.
- 박종우, 「松江 鄭澈의 詩世界와 政治現實」. 『漢文學報』 제4집, 우리한문학회, 2001, 33-50쪽.
- 朴平植, 「朝鮮初期의 貨幣政策과 布貨流通」. 『東方學志』 제158집, 연세대학교

- 국학연구원, 2012, 81-141쪽.
- 徐首生, 「古時調의 解釋과 作品 是非」. 『語文學』 제14집, 韓國語文學會, 1966, 1-20쪽.
- 元裕漢, 「朝鮮後期の 金屬貨幣流通政策 - 17世紀前半의 銅錢流通試圖期를 中心으로」. 『東方學志』 제1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2, 97-134쪽.
- 유현재, 「조선 초기 화폐 유통의 과정과 그 성격 - 저화 유통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제49집, 朝鮮時代史學會, 2009, 65-971쪽.
- 鄭炳昱, 『時調文學事典』. 新丘文化社, 1974.
- 秦星圭, 「朝鮮時代 驛에 對한 一考察」. 『論文集』 제9집, 新羅大學校, 1980, 239-249쪽.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77.
- 崔台鎬, 「松江漢詩年代考」. 『牧園大學論文集』 제10집, 牧園大學校, 1986, 85-100쪽.

국 문 요 약

정철(鄭澈)의 <새원가> 연작 총3수에 관한 기존의 평설과 그 견해는 단순히 그 제작 배경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뜻밖의 오해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새원가> 제1장의 “人事”를 간단히 ‘절[答禮]로 해석하거나 ‘원췌’를 ‘원님’으로 해석하거나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오해다. 본고는 이러한 이유에서 정철의 <새원가> 연작 총3수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정황을 논구해보았다.

정철은 <새원가> 제2장을 이수(李銖)의 옥사에 불만을 품고 사직한 직후의 1579년 그의 44세 여름에 고양에서 지었고, 이것은 <새원가> 제1장이 또한 당연히 이 기간에 지어진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새원가> 제3장은 언어의 기색이 조금 다르니, 이것은 정객(政客)의 방문을 사절하는 기색이 뚜렷한 점에서 심의겸(沈義謙)의 당파로 몰려서 파직된 직후의 1585년 그의 50세 9월 전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양의 신원(新院)은 일찍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전토를 베풀어 원주를 배치한 적이 없었다. 정철이 몸소 원주를 자처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정철이 맞이한 나그네는 갖가지 인생사를 위하여 겨우 두어 말에 지나지 않는 양식을 가지고 일생에 마지못할 길을 떠난 사람들이 기 쉬웠다. 정철의 <새원가> 제1장에 나오는 “人事도 하도 할샤”는 이러한 왕래를 애처롭게 여기는 탄식의 하나다.

투고일 2013. 3. 25.

심사일 2013. 3. 25.

게재 확정일 2013. 5. 8.

주제어(keyword) 정철(Jeong Cheol), 「새원가」(Saewonga), 배경(context), 원(inn), 원주(innkeeper)

